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46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출입국 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대상자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검사원 명시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5.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를 설립하였으며,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

국가는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입·출국 사실 신고 및 소독·검역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소독 및 검역 의무 적용 대상자인 가축방역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2에 별도로 명기하여 소독 및 검역 의

무 적용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명기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동법 제5조제6항제7호의2에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5조제6항제3호의2).

Ⅲ. 검토의견

1. 출입국 사실 신고 및 소득·검역 대상자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검사원 명시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 중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방역사 등에게 출입국 사실 신고 의무 및 소독·검역 의무(이하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의무의 부과 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illegible]

현행	개정안
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3의2. <u>가축방역사</u> 4. ~ 8. (생략) ⑦ ~ ⑩ (생략)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가축방역사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u> 4. ~ 8.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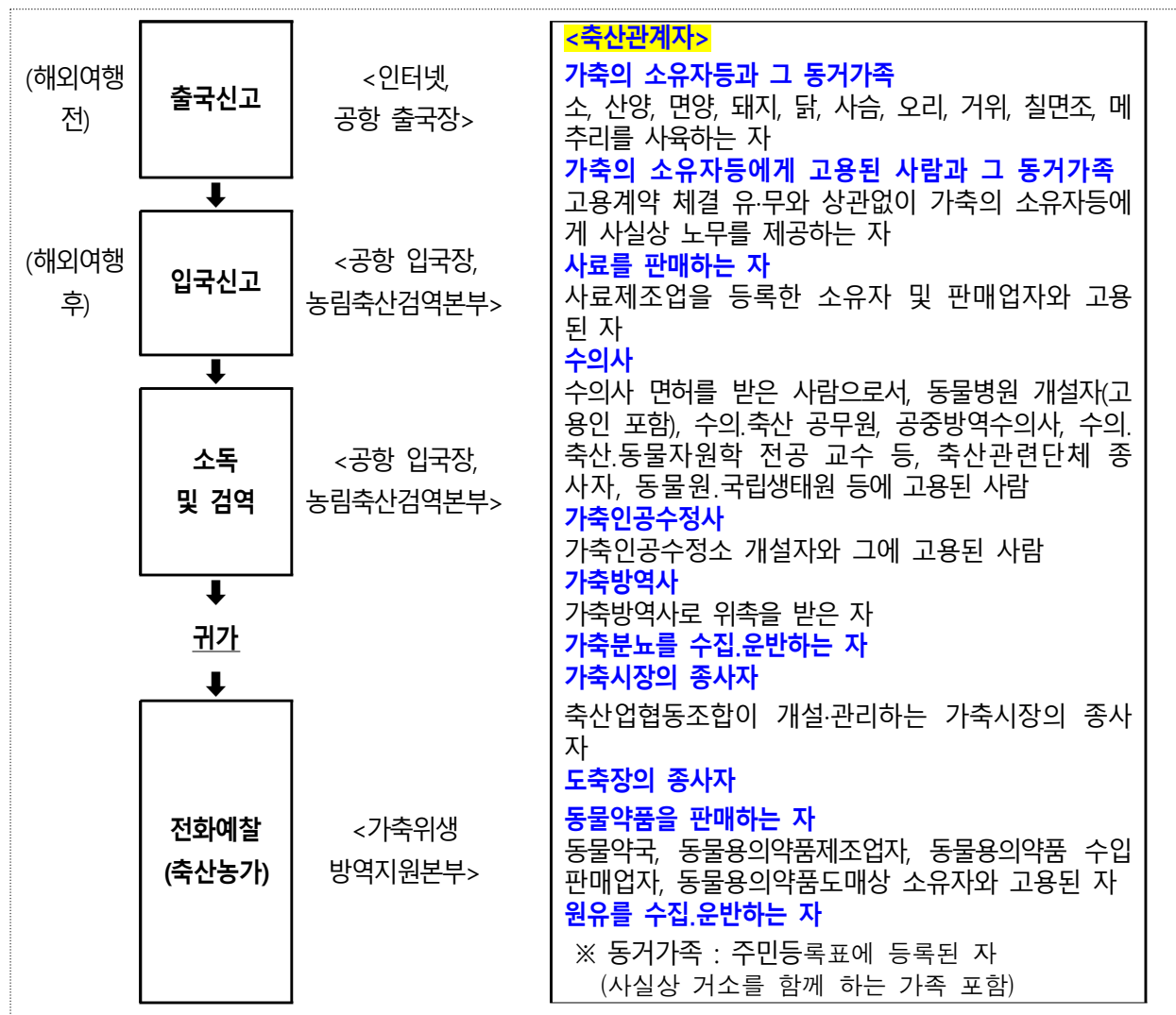
현행법은 ①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③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가축방역사, ⑤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⑥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⑦ 가축시장의 종사자, ⑧ 원유(原乳)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⑨ 도축장의 종사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신고 등 의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이는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및 소독·검역 절차 및 축산관계자 범위 】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3의2.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사람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사람
- 7의2. 도축장의 종사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한편,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²⁾에 따른 검사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서³⁾ 가축이 육류가 되는 최초단계인 도축과정에서 도축장 위생관리 및 내장·지육·림프절검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을 검색하여 생산단계에서 부적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검사원은 도축장에서 근무하며 가축과 직접 접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 등 의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실무상으로는 ‘도축장의 종사자’로 임의 분류하여 검사원에 대하여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도축검사관과 검사원의 임명, 배치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였음. 이는 1962년부터 2012년까지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안전 관리를 하다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였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에 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게되면서 계속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는 중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3. 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주요사업(검사원제도) 참고

이에 개정안은 검사원을 신고 등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규제의 명확성과 가축전염병 예방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 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방역사의 경우⁵⁾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신고 등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신고 등 의무 대상자에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함으로써 의무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5)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0조(가축방역사) ③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들어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행하는 가축방역에 관한 질문
2.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시장·가축사육시설 또는 도축장에 들어가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3.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행하는 업무의 보조